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4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권리의무의 승계를 배수설비로만 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은 배수설비 외에 사용료 등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하도록 되었던 것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배수설비만을 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p> <p>·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배수</p> <p>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 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